

# 서 울 고 등 법 원

## 제 5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06나9332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창동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1. 정\*\*

2. 임\*\*

피고 1, 2의 주소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3. \*\*정밀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대표자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 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0. 선고 2006가합7599 판결

변 론 종 결 2007. 8. 21.

판 결 선 고 2007. 9.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물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정\*\*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이\*\*을 통하여 피고 정\*\*와 사이에 피고 정\*\* 소유의, 기중기가 장착된 경기\*\*호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다만, 실제로 피고측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 정\*\*의 남편으로서 그녀 명의로 '\*\*크레인'이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임\*\*이다).

나. 피고 임\*\*은 이 사건 피보험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이\*\*에게 상의하면서, 이 사

건 피보험차량에 기중기가 장치되어 있으니 물건 등을 내리고 올리는 과정에서 물건 등이 떨어질 경우 보상되는 보험을 요청하였고, 이\*\*은 영업소에 전화하여 피고 임\*\*이 요청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의 보험료 산출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 계약에는 기계장치기계요율(150%)의 특별요율이 적용되었다.

다.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임\*\*은 2005. 11. 10. 피고 \*\*정밀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금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박리기(IS STRIP-MASTER) 운송작업을 의뢰받고, 2005. 11. 18. 12:40경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 소재 주식회사 \*\* 공장 구내에서 피고 회사 소유의 박리기를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에서 위 공장 건물 2층으로 들어올리던 중 작업부주의로 박리기를 이 사건 피보험차량 위로 추락시키는 바람에 박리기가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은 대물배상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제12조 제1항 제3호 제9목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하 '제1면책조항'이라고 한다)"를, 같은 호 제11목에서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이하 '제2면책조항'이라고 한다)"를 각 규정하고 있고, 피보험자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약관 제9조 제2항 3목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 같은 항 제5목에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이른바 '운전피보험자')"를 각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박리기는 승낙피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물건으로서 위 약관 제12조 제1항 제3호 제9목 소정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거나, ② 위 약관 제12조 제1항 제3호 제11목 소정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약관의 제1, 2 면책조항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 (1) 제1면책조항에 의한 면책 여부

피고 회사가 피고 임\*\*에게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가지고 그 소유의 박리기를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그 운전자인 피고 임\*\*과 함께 임차하는 등으로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정\*\*의 승낙(피고 정\*\*의 직접 승낙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실제로 관리·사용한 피고 임\*\*을 통한 간접 승낙을 포함한다)을 얻어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그 책임과 지배하에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꼬제6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2항 제3목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2) 제2면책조항에 의한 면책 여부

이 사건 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를 보

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약관과 같은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2007. 1. 11. 선고 2003다11820 판결 등 참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이 계약의 일부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1555 판결, 2006. 9. 8. 선고 2006다241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에 비추어 제2면책조항을 해석하면, 제2면책조항에 정한 '운송'은 피보험자동차가 이동하거나 적어도 그 이동에 수반하여 잠시 정차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피보험자동차가 이동을 완료하여 적어도 상당한 시간 내에는 이동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 소유의 박리기를 이 사건 피보험차량에 싣고 목적지까지 이동하여 운송을 마친 후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에서 기중기로 공장 건물 2층으로 들어올리던 중 떨어뜨린 사고이므로, 제2면책조항에 정한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손해가 생긴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제2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정\*\*에게 제2면책조항을 명시·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제2면책조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600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임\*\*이 이 사건 피보험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이\*\*에게 상의하면서, 이 사건 피보험차량에 장착된 기중기로 물건 등을 내리고 올리다가 물건 등이 떨어질 경우 보상되는 보험을 요청하였고, 이\*\*도 이에 따라 영업소에 피고 임\*\*이 요청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의 보험료 산출을 부탁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임\*\*이 요청한 사고에 대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제2면책조항은

'만약 설명되어졌다면 피고 정\*\*, 임\*\*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 정\*\*, 임\*\*에게 중요한 것'으로서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에 정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기록상 원고나 이\*\* 등이 피고 정\*\*, 임\*\*에게 제2면책조항을 명시·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이\*\* 자신도 제2면책조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에 걸쳐 피고 정\*\*, 임\*\*에게 위 면책조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제2면책조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_\_\_\_\_

판사      이현종 \_\_\_\_\_

판사      김동진 \_\_\_\_\_

## **별 지**

### **1. 대물사고**

피고 임\*\*이 2005. 11. 18. 12:40경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소재 주식회사 \*\* 공장 구내에서 경기\*\*호 화물자동차에 장치된 기중기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박리기 를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위 공장 건물 2층으로 들어올리던 중 박리기를 이 사건 피보험차량 위로 추락시키는 바람에 박리기가 파손된 사고.

### **2. 자동차종합보험계약**

피보험차량 : 경기\*\*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 정\*\*

보험종목 : 영업용. 끝.